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208
----------	------

제출연월일 : 2010. 3. 2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령 명시 및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세 계속적용 하고자 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안제11조)

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세 부과(안제15조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고성군세 감면 조례」,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
- 2009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세정과-14876(2009. 12. 01.), 세정과-14982(2009.12.02.) 감면조례 표준안

○ 예산조치 : 불필요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동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로 한다.

동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의5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2 ~ 3(생략)</p> <p>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이 ----- ----- ----- ----- ----- ----- -----</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15조의5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p> <p>「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